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0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의원기록물의 법문표현을 예시에서 부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, “공공기관등”의 약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의 위치를 수정함(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).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4호 중 “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”을 “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(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교육·연구기관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교육·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“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등(국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교육·연구기관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직무) ① 국회 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.	제2조(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2조(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4. <u>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</u>	4. <u>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분류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</u>	4. <u>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(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5. ~ 7. (개정안과 같음)
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<u>교육·연구기관</u> 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과 공중에 대하	② (현행과 같음)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·연구기관</u> ----- ----- -----

여 도서관서비스를
제공할 수 있다. 이
경우 도서관서비스
의 대상과 내용은
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도서관자료의
납본 등) ① 공공기
관등이 도서관자료
를 발행 또는 제작
한 때에는 그 발행
일 또는 제작일부
터 30일 이내에 그
자료 2부와 디지털
파일을 도서관에
납본하여야 한다.
이 경우 도서관은
공공기관등의 온라
인 자료를 수집할
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공공기관등이
아닌 자가 도서관
자료(온라인 자료는
제외한다)를 발행
또는 제작한 때에
는 그 발행일 또는

제7조(도서관자료의
납본 등) ① 국가
기관, 지방자치단
체, 공공기관등(국
회를 포함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
다)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도서관자
료(온라인 자료는
제외한다. 다만, 온
라인 자료 중 「도
서관법」 제23조에

제7조(도서관자료의
납본 등) ① 국가
기관, 지방자치단
체, 공공기관·단
체, 교육·연구기
관(이하 “공공기관
등”이라 한다)---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 부를 도서관에 납 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납 본한 자에게 그 자 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 다. ④ ~ ⑥ (생략)	<u>따라 국제표준자료 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 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	④ ~ ⑥ (개정안과 같음)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0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0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고동진 · 권영세
안상훈 · 이현승 · 이상휘
박성민 · 백종현 · 강대식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·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,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4호, 제7조제1항 및 제3항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국회의원기록물의 법문표현을 예시에서 부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, “공공기관등”의 약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의 위치를 수정함(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).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·연구기관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교육·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4.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(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)의 수집
· 분류 · 정리 · 보존 · 평가 · 활용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공공기관등”을 “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교육·연구기관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)”를 “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. 다만, 온라인 자료 중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직무) ① 국회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</u> 5. ~ 7. (생략)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<u>교육·연구기관</u>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 제7조(도서관자료의 납본 등) ① <u>공공기관등</u>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	제2조(직무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(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)의 수집·분류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</u>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교육·연구기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7조(도서관자료의 납본 등) ① <u>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교육·연구기관</u>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

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 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)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. 다만, 온라인 자료 중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)-----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